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2
----------	-------

발의연월일 : 2021. 7. 30.

발 의 자 : 김예지 · 신원식 · 김선교
백종헌 · 권명호 · 김승수
최승재 · 金炳旭 · 배현진
김미애 · 김 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

설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3.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 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 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 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의2. (생 략) <u><신 설></u></p> <p>6. · 7. (생 략) ② (생 략)</p>	<p>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 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 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 -----.</p> <p>제40조(과태료) ① ----- ----- ----- -----.</p> <p>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p> <p>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